

고성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

(의안번호 제925호)

심사 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5. 7. 4 고 성 군 수
나. 회 부 일 자 : 2005. 7. 5
다. 상 정 · 의 결 일 자 : 2005. 7. 14 산업건설위원회 상정 · 의결

2. 제정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우리군 안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위원회의 기능규정 (안 제2조)
나.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이내 위원구성 (안 제3조)
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보궐위원의 임기는 잔임 기간으로 함. (안 제4조)
라.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상 · 하반기로 년 2회 정기회의와 필요시 임시회 소집 (안 제6조)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고성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2004. 3. 11일 법률 제7188호로 공포 시행됨에 따라 이 법의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 조례 안 제1조에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하고,
 - 안 제2조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에 규정된 지역위원회에서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등의 기능을 규정하고,
 - 안 제3조에 위원회는 15인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재난관련 기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도록 하고 간사를 지정 하였으며,
 - 안 제4조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안 제5조에 위원장의 직무를 규정하고,
 - 안 제6조에 위원회의 회의는 년 2회 정기회와 임시회를 구분하고 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도록 하고
 - 안 제7조에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단체의 직원중에서 지명하여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실무위원회 운영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9조에 위원회와 실무위원회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 전문가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례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검토결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위임 규정에 의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므로 이 조례는 제정 시행하는 것이 타당함을 검토보고 합니다.

5. 질의 및 답변 :

- 문 : 재난안전관리과장과 행정과장을 당연직으로 위원으로 한 이유는 ?
- 답 : 고성군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은 경상남도의 준칙에 의하여 만들었습니다. 당연직위원은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있습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과 행정과장은 신규보직자로 경험부족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임명되는 사람의 위치에 따라 위원장이 위촉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임.

6. 토 론 :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박태공의원이 수정안 제출

- 고성군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원안)의 제3조 위원구성에 있어 제1항 제8호 재난안전관리과장 제9호 행정과장을 삭제하고 제14조 위임규정에 이 조례외에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위원장이 정한다를 삭제하는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 조례안 제3조 제1항 제8호와 제9호는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위원이 될 수 없고 위원장이 동조 제10호에 의거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로서 위원장이 위촉할 수 있는 대상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 제14조의 위임규정은 조례에서는 규칙이나 규정으로 위임되어야 할 것을 당해 위원장에게 위임함은 부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위와 같이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8. 심사결과

○ 수정안 상정결과 참여의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

9. 불 임 : 수정안 1부.

고성군조례 제 호

고성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고성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제1항 제8호 및 제9호를 삭제한다.

안 제3조제1항중 제10호를 제8호로 한다.

안 제14조를 삭제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p>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부군수 2. 통영소방서장 3. 고성경찰서장 4. 육군8358부대 제2대대장 5. 경상남도고성교육청교육장 6. 한국전력공사고성지점장 7. KT 고성지점장 <u>8. 재난안전관리과장</u> <u>9. 행정과장</u> <u>10.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u> 	<p>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p> <p>-----</p> <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 2. ----- 3. ----- 4. ----- 5. ----- 6. ----- 7. ----- <p>〈삭제〉</p> <p>〈삭제〉</p> <p>8. <u>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u></p> <p>〈삭제〉</p>
<p>제14조(위임규정) 이 조례 외에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위원장이 정한다.</p>	

고성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고성군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2.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3.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
4.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조정
5.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당해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6. 기타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의 심의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부군수
2. 통영소방서장
3. 고성경찰서장
4. 육군8358부대 제2대대장
5. 경상남도고성교육청교육장
6. 한국전력공사고성지점장
7. KT 고성지점장
8.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②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 관리담당(6급)이 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①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기간으로 한다.
②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군수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①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에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 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 실무위원회) ①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 기관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단체의 직원중에서 당해 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 소집한다.

④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제8조 (위원의 활용) 새로운 정책의 개발·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 수립 시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9조 (조사·연구의 의뢰) ①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게 연구·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관계기관의 협조요청) ①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 (수당)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회의록의 비치)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 (회의결과의 통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부 침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